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6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최형두・김상욱・강대식

조인철 • 윤한홍 • 김소희

서천호 · 강승규 · 이종욱

김종양ㆍ허성무ㆍ김미애

이양수 · 서일준 · 윤영석

신성범 · 최보유 · 김예지

유상범 • 조정훈 • 주호영

김상훈 · 서범수 · 조은희

김태호 의원(25인)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 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 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나노기술인프라"란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나노팹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국내 나노팹등을 연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 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 치단체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 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가나노기술인프라"란 정부
	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
	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나노팹을 말한
	<u>다.</u>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	
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	
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u>나노팹센</u>	국가나노
터를 구축 • 운영한다.	기술인프라를 지정하고 구축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u>나노팹센터</u> 의 인근	③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국내 나 노팹 등을 연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 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제4 항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 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기단체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 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_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 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 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 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다.